코스닥 코넥스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 운영지침

제정 2020. 12. 29.
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이 한국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, 증권사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은 기술·사업성 전문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전문평가"란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 등 비상장 기업 의 기술성·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.
- 2. "평가신청기업"이란 전문평가를 받고자하는 기업을 말한다.
- 3. "주선인"이란 신규상장을 하고자 하는 법인을 주선하는 상장주선인 등 피평가 기업을 주선하는 기업을 말한다.
- 4. "의뢰인"이란 진흥원에 기술성·사업성 등에 대한 전문평가를 의뢰하는 거래소, 주선인 등을 말한다.
- 5. "평가가능업종"이란 핀테크, 블록체인, 보안 등 ICT와 관련해 진흥원이 전문평가 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한다.
- 6. "평가담당부서장"이란 전문평가를 의뢰받고 전반적인 운영 실무를 주관하는 내부부서의 장을 말한다.
- 제3조(전문평가 접수) ①진흥원은 전문평가를 의뢰받은 후 전문평가 가능여부를 의뢰인 에게 회신한다.
 - ②전문평가 진행이 확정되면 평가신청기업은 주선인을 통해 평가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다.
 - ③평가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평가신청기업이 제출한 평가신청서를 접수한다.
- 제4조(평가위원회 구성) ①진흥원은 전문평가 진행이 확정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. ②평가위원은 평가가능업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내·외부 전문가 7인 이 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평가담당부서장이 위촉한다. 단, 박사학위 소지자 3인과 특허전문가 1인은 반드시 포함한다.

- 1. 박사학위 소지자
- 2.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
- 3.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
- 4. 변리사 등 특허전문가
- 5. 기업·기술가치평가사(KCVA), 변호사, 회계사, 기술지도사, 경영지도사
- 6. 기술사, 정보시스템감리사, 정보보안기사, ISMS-P, CISSP, CISA, OCNP, CCIE, PMP, DAP, ADP, CFA, 국제FRM 자격 소지자
- 7.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평가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자 ③평가위원 희망자는 [별지 제1호]의 평가위원 신청서, [별지 제2호]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, [별지 제3호]의 서약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, 전문평가의 전 과정 및 최종평가서 작성을 총괄한다.
- ⑤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평가담당부서 소속 직원 으로 한다.
- ⑥평가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, 불가피한 경우 평가위원장의 판단하에 서 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.
- ⑦평가위원회에 선정 된 외부위원의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 나 의결에 참석할 수 없고 참석이 불가할시 사전에 평가의견을 제출해야한다.
- 제5조(평가위원 준수사항) ①평가위원은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한다.
 - ②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된다.
 - 1. 본인 또는 배우자가 평가신청기업의 주주이거나 채권자인 경우
 - 2. 기업 또는 기업 관계회사의 전·현직 임직원인 경우
 - 3. 기업 임직원,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 친족관계인 경우
 - 4. 보증 및 평가업무 외에 기업과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를 이행한 경우
 - 5. 제품개발·투자 등 기술·생산·자본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거나 협력하는 등 기업과 제휴관계가 있는 경우
 - ③평가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 야 한다.
 - ④1항, 2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이 평가위원 본인에게 있음을 알리기 위해 진흥원은 평가위원으로부터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
- **제6조(평가수수료)** 진흥원과 전문평가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평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- 제7조(평가기간) 진흥원은 의뢰인의 평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주 이내(외국기업의 경우 8주 이내)에 평가를 종료한다. 단, 필요할 경우 의뢰인과 협의하여 평가기간을 연장할수 있다.
- 제8조(평가결과) 진흥원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된 [별표 제1호] 등급 및 평가보고서를 평가신청기업(주선인 경유) 및 거래소에 각각 통보한다.
- 제9조(평가수당) 평가위원에 대한 수당은 진흥원 수수료 지급지침을 따른다.
- 제10조(준용규정) 전문평가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거래소의 「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」을 준용할 수 있다.

부칙 <2020. 12. 29>

본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

(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제8조 관련)

□ 기술기반기업

평가등급	등급별 정의					
AAA	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 (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음)					
AA	매우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 (장래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임)					
А	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 (장래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임)					
BBB	우수한 기술력을 보유 (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음)					
ВВ	우수한 기술력을 보유 (장래의 환경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)					
В	우수한 기술력을 보유 (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음)					
CCC	보통 수준의 기술력 (장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음)					
СС	보통 수준의 기술력 (장래 환경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)					
С	보통 수준의 기술력 (장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음)					
D	보통 수준 이하의 기술력					

□ 사업모델기업

평가등급	등급별 정의
AAA	최고의 사업성을 가진 기업 (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음)
AA	매우 높은 사업성을 가진 기업 (장래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임)
А	높은 수준의 사업성을 가진 기업 (장래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임)
BBB	우수한 사업성을 보유 (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음)
ВВ	우수한 사업성을 보유 (장래의 환경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)
В	우수한 사업성을 보유 (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음)
CCC	보통 수준의 사업성 (장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음)
CC	보통 수준의 사업성 (장래 환경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)
С	보통 수준의 사업성 (장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음)
D	보통 수준 이하의 사업성

[별지 제1호]

기술성·사업성 전문평가위원 신청서(외부위원)

	성명				
인	생년월일	00.00.00	1171		
적	휴대폰번호	010-0000-0000	사진		
사	이메일주소				
항	자택주소				
	(현거주)				
직	직장명		(현)근무연수	00년 00개월	
장	직위		전화번호	000-0000-0000	
0	직장주소				
	회사명	직위	주요업무	근무기간	
경				0000.00~0000.00	
력				0000.00~0000.00	
				0000.00~0000.00	
	학교	학과	전공	학위구분	
학	OO대학교			학사	
력	OO대학교			석사	
	OO대학교			박사	
	자격	증명	등급		
자					
격					
~					

위와 같이 기술성 사업성 전문평가인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		
20		

기술성·사업성 전문평가위원 신청서(내부위원)

	성명				
인	생년월일	00.00.00	1171		
적	휴대폰번호	010-0000-0000	사진		
사	이메일주소				
항	자택주소				
	(현거주)				
직	직장명	한국인터넷진흥원	(현)근무연수	00년 00개월	
장	직위		전화번호	000-0000-0000	
Ö	직장주소				
	회사명	직위	주요업무	근무기간	
경				0000.00~0000.00	
력				0000.00~0000.00	
				0000.00~0000.00	
	학교	학과	전공	학위구분	
학	OO대학교			학사	
력	OO대학교			석사	
	OO대학교			박사	
	자격	증명	등급		
자					
격					
7					

위와 같이 기술성 사업성 전문평가인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. . .

작성자 : (인)

담당부서장 : (인)

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
O	개인정보	수집・이용	목적	:	기술성·	사업성	전문평가	운영을	위한	평가위원
	선정									

- 0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: 한국인터넷진흥원
- o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휴대폰번호, 이메일주소, 자택주소, 사진, 직장명, 근무연수, 직위, 전화번호, 직장주소, 경력현황, 학력현황, 자격현황
- o 보유 및 이용기간 : 기술평가인력 신청서 제출로부터 5년(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①항)
- o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, 다만, 이 경우 전문평가 평가위원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※ [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]

평가위원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할 경우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o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: 전문평가위원 위촉 시 전문평가 의뢰기관(한국거래소, 증권사 등) 제공 및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서 적법한 요청 시 제공

개인정보의 수집	및 이용목적에	동의하십니까?(해당란에 √표시)
□ 동의함		□ 동의하지 않음

근무처 : 0000000000 작성자 : (인)

서 약 서

본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OOOOOO 간에 체결된 '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 계약서'에 의하여 OOOOOO로부터 의뢰받은 전문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, 계약서 제6조(비밀유지)에 따라 전문평가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평가신청기업 △△△△의 영업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.

또한,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고, 평가 대상 기업의 임원/주주/경쟁기업임원 등에 따른 이해관계가 부존재하여 전문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을 서약하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.

<이해관계 부존재 사항>

- 1. 본인 또는 배우자가 평가신청기업(이하 '기업'이라 칭함)의 주주이거나 채권자인 경우
- 2. 기업 또는 기업 관계회사의 전·현직 임직원인 경우
- 3. 기업 임직원,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 친족관계인 경우
- 4. 보증 및 평가업무 외에 기업과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를 이행한 경우
- 5. 제품개발·투자 등 기술·생산·자본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거나 협력하는 등 기업과 제휴관계가 있는 경우

20 . .

근무처 : 00000000000

작성자 : (인)